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21 선고 2021나53351, 2021나55906(병합)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
소 · 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21 선고 2021나53351, 2021나55906(병합)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6. 10 선고 2019가단321180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

담당변호사 최병주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국제

담당변호사 최진갑

변론종결 2022. 6. 30.

판결선고 2022. 7. 21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9가단32118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원고에게, 제1심피고 B은 138,272,122원과 그 중 8,408,043원에 대하여 2019. 4. 9.부터 2019. 5. 8.까지는 연 6%, 29,864,079원에 대하여 2019. 4. 19.부터 2019. 5.18.까지는 연 6%,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6. 13.부터 2019. 7. 12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제1심피고 주식회사 C은 제1심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38,272,122원 중 8,408,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4. 9.부터 2019. 5. 8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,

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나. 제1심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23. 체결된 매매계약을 162,337,0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62,337,0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제1심피고 B,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제1심피고 B, 주식회사 C이 항소하였다가 2022. 3. 31. 항소를 취하하여 분리·확정되었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여,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】

○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 “28호증” 다음에 “을다 제15, 16, 26호증”을 추가한다. ○ 제1심판결 제9면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【아)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고는 부산 사상구 Q, 같은 구 R을 각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, 위 부산 사상구 Q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19. 1. 10., 같은 구 R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20. 5. 30.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인 2018. 10. 23.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대출금 2,9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.

자)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기간 위 부산 사상구 Q 및 같은 구 R에 있는 사업장을 유지하였고,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결국 2019. 1. 10.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며, 같은 구 R에 있던 사업장에 대한 인도는 2020. 8. 3.경 이루어졌다.

차)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,950,000,000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피고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22,500,000원을 더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2,972,500,000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. 그러나 부산 사상구 Q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. 1. 10.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데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여 임대차보증금 50,000,000원 중 10,000,000원만을 지급받았고, 같은 구 R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. 6.경 임대차계약해지로 종료되면서 미지급 차임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 임대차보증금 30,000,000원 중 돌려받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, 위 사업장들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 22,500,000원을 이 사건

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.】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병준, 판사 안혜미, 판사 허성민

별지